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49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7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13조제2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을 취득·처분 모두 현행 기준 “20억원”에서 상향된 “40억원”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의회의 심의 범위 유지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적용하는 기준인 “20억원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2. 주요내용

○ 안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40억원”을 각각 “20억원”으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40억원”을 각각 “20억원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.
	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	1. ----------
	가. 취득의 경우: 40억원	가. ----------: 20억원
	나. 처분의 경우: 40억원	나. ----------: 20억원
	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	2. (개정안과 같음)
	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	
	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	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”를 “소속 기관의 장에게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학교복합시설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2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

제15조의 제목 “(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·수익허가 특례)”를 “(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특례)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”을 “(사용허가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)”를 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부)”를 “(사용허가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사용·수익허가부”를 “사용허가부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행정재산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 사용료)를 “(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사용료)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”를 “사용을 허가할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제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, “연 6회”를 “연 12회”로 한다.

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무의 위임) 교육감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	제3조(사무의 위임) ---------- ----------소속 기관의 장---------- ----------
<신 설>	제3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복합시설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제4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 ① (생 략)	제4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·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실태조사) ① (생 략)	제9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	4. 사용허가 ---------- ----------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: 2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
제15조(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·수익허가 특례)	제15조(---------- 무상사용허가 ----------)
제16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6조(사용허가----------) ----------사용허가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사용・수익허가)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・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사용・수익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.	제17조(사용허가) ①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행정재산을 사용・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용・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	5. 사용허가 ----------
6. 사용・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	6. 사용허가 -----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사용・수익허가부)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부(전산자료를 포함한다)를 비치하고 기록・보존하여야 한다.	제18조(사용허가부) ---------- 사용허가부 ----------.
제19조(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・수익허가 사용료)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출한다. 다만,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9조(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) ① ----------사용을 허가할 때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 각 기관은 일시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	②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.
제21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.	제21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.
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생 략)	제31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	1. ---------- 50만원----------: 연 12회 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(생 략)	제4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